

##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를 위한 제원 통보 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번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39조제1항제4호)
-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대상 규정(안 제40조의17)
- 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간주 규정 신설(안 제40조의18)
- 라. 신고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40조의19)
- 마.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업무의 대행 범위 규정(안 제40

조의20)

- 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변경인증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1, 별지 제24호의6서식)
- 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2)
- 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안 제40조의23, 별표 5의10)
- 자.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의 신고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4)
- 차.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합성 확인 절차 등 규정(안 제56조의12, 별지 제34호의6서식)
- 카.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절차 등 규정(안 제56조의13,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 타.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자료 제출 절차 등 규정(안 제56조의14)
- 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적용 예외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56조의15)
- 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절차 등 규정(안 제56조의16)
- 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56조의1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0조의 9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번호 또는  
제40조의17 각 호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제6장의3(제40조의17부터 제40조의2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40조의1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  
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  
차”라 한다)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조립한 부분이 인증받은 자동  
차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2. 피건인자동차를 이를 건인하는 자동차에 연결 시 건인하는 자동차  
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3.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

제40조의18(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간주)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중 수입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의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2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업무의 대행)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9제5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

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2. 인증서 발급·관리
3. 법 제30조의10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의12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제40조의2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 유효기

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그 갱신 신청이 승인 또는 거부된 날과 본래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 및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출기한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5의10과 같다.

제40조의24(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신고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 제30조의10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장의2에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기존 자기인증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특례를 받은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6서식과 함께 업데이트가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데이트 자료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① 법 제34조의5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후 비교표
2. 업데이트 전송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 후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목적·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확인 신청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의14(업데이트 관련 자료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위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데이트 자료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5(업데이트 관련 규정 적용 예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조립한 부분이 인증받은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 2. 피견인자동차를 이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하는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 3.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

제56조의16(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조사 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위 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 및 제작 연도
- 2.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 3.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준수 여부
- 4. 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의17(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중 미준수 내용 및 원인

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들은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를“(무단 해체·조작금지대상 자동차장치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 본문”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장의2의 제목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한다.

제57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57조의7 앞에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삭제한다.

제57조의7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150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3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처리에 관한 업무

별표 5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의23 관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0조의17제4호 및 제56조의15제4호는 이 규칙 시행

일부 2027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심사구분	[ ]최초심사	[ ]갱신심사 [ ]변경심사
	최초 제작자명		
	인증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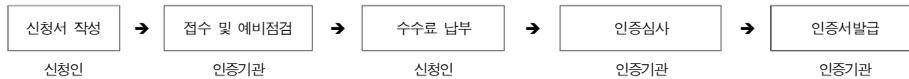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안내사항	1. 변경심사의 경우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출	

###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업 체 명 :
3. 인증의 범위 :
4. 유효기간 :
5. 최초 제작자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 백상지 (150g/㎡)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제작자명		
	주소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업데이트 예상 시행일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차명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기존 제원통보사항을 변경할 경우)		
	업데이트와 관련되거나 업데이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기준 및 개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안내사항	1. 동일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복수의 차명, 제원관리번호에 일어나는 경우 중복 기입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대표자명
	주소
자동차	차명
	차종
	최초제작자명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소프트웨어명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업데이트 항목 전·후 비교표 2. 업데이트 전송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 후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자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b>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b>	
신청인	제작자명 <span style="float: right;">제작자등록번호</span>
	대표자명 <span style="float: right;">대표자생년월일</span>
	주소
자동차	차명 <span style="float: right;">최초제작자명</span>
	형식 <span style="float: right;">원동기형식</span>
	차대번호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주요 확인사항	
적합 여부	
<p>「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성능시험대행자</b> (인)</p>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
	<p>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작자들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② ~ ④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  
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조립한 자동  
차 중 추가로 제작·조립한  
부분이 인증받은 자동차의 전  
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를 이를 견인하  
는 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하  
는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3.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  
차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

제40조의18(자동차제작자등의 자  
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간주)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  
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  
동차제작자등 중 수입자는 수입  
하는 자동차의 외국 최초 제작

<신 설>

<신 설>

<신 설>

등이 수립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2. 인증서 발급·관리

3. 법 제30조의10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의12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들의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제40조의2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

<신 설>

<신 설>

제40조의2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출 기한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0조의2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5의10과 같다.

<신 설>

제40조의24(자동차 사이버공격·

<신 설>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특례를 받은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6서식과 함께 업데이트가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데이트 자료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

제56조의12와 제56조의13의 선후 관계 및 제출서류의 차이점,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처(용도) 설명 요망

<신 설>

<신 설>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의14(업데이트 관련 자료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들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들이 위 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데이트 자료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5(업데이트 관련 규정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

<신 설>

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조사 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신 설>

수 있다.

제56조의17(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중 미준수 내용 및 원인
  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 설>

<p>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p> <p>&lt;신 설&gt;</p> <p>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의2. (생 략)</p> <p>&lt;신 설&gt;</p> <p>5의3. (생 략)</p> <p>6. (생 략)</p> <p>&lt;신 설&gt;</p> <p>6의2. (생 략)</p> <p>7. 삭 제</p> <p>7의2. ~ 9. (생 략)</p> <p>②·③ (생 략)</p>	<p>대한 특례</p> <p>&lt;삭 제&gt;</p> <p>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p> <p>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p> <p>-----</p> <p>-----</p> <p>--.</p> <p>1. ~ 5의2. (현행과 같음)</p> <p>5의3. 법 제3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기록·관리에 관한 업무</p> <p>5의4. (현행 제5호의3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치리에 관한 업무</p> <p>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p> <p>7의2.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